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처분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29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
				처분 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임0회	'87.06.23.	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10번길 7-6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 불이행 - 출석통지 2회 불출석 및 연락두절 (1차:'26.8.20., 2차:'26.8.28.)	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단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9. 29. ~ 2026. 10. 13. (15일간)

5. 문의사항: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윤미선(☎ 031-828-0875)